##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1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주호영·권영세·곽규택

김승수 · 장동혁 · 이헌승

김종양 • 구자근 • 신동욱

이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 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것 이 요구되는 바, 소득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 면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 외하고 있음.

한편,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은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되는 바, 이로 인해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던 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소득(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1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	
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	
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 질병 ·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	
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	
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감하여 산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이전소득</u>	4. 이전소득(다만,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1항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
	<u>다)</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